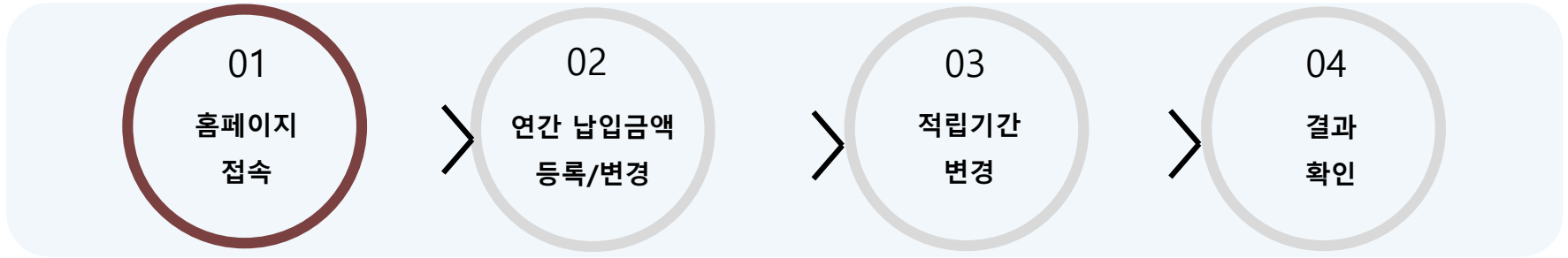


# [홈페이지] 개인연금 정보변경 안내가이드

한국투자증권 마케팅부  
( 2 0 2 1 . 8 월 )

# 개인연금 정보변경

## 1.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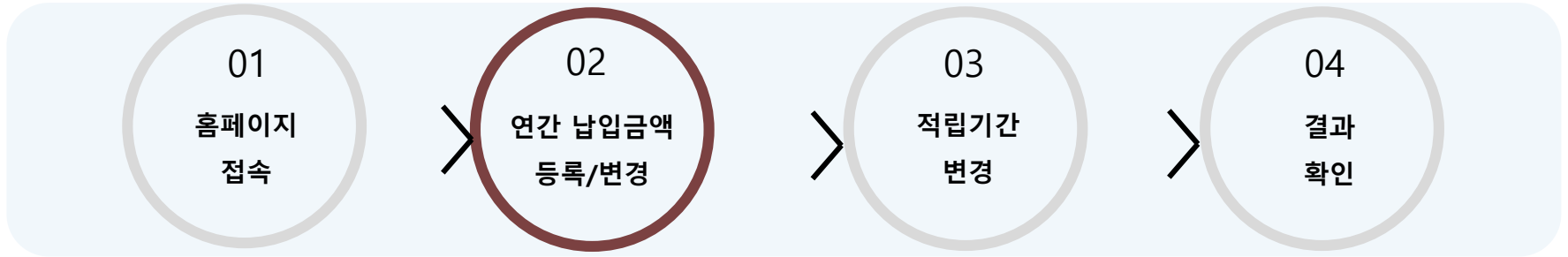


검색창에 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[www.truefriend.com](http://www.truefriend.com) 입력하여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접속



# 개인연금 정보변경

## 2. 개인연금 정보변경>연간 납입금액/적립기간변경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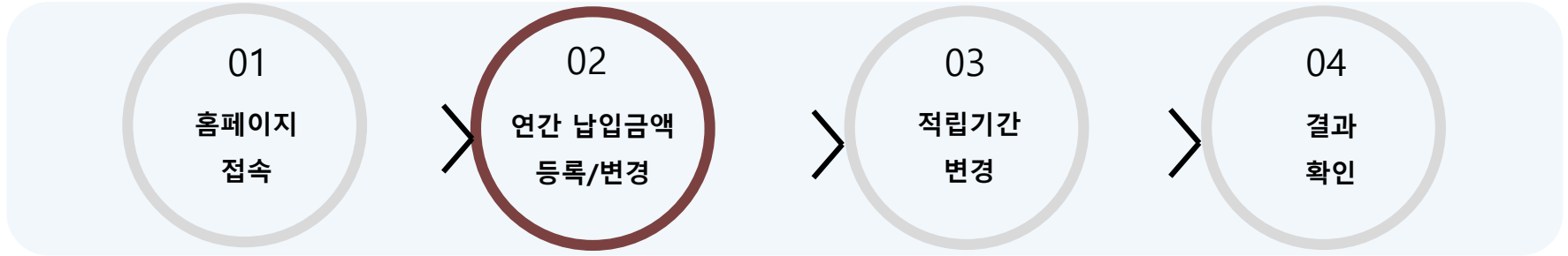


### 연간 납입금액/적립기간변경 선택

한국투자 <small>증권</small>	나의자산	리서치	금융상품	<b>연금</b>	트레이딩	서비스신청	뱅킹/대출/청약	이용안내	Q
홈 >									
<b>· 개인연금 계좌개설</b> 스마트폰 계좌개설 근거계좌 추가개설	<b>· 개인연금 계약이전</b> 개인연금 계약이전(타사 →당사) 연금저축펀드→연금저축 계좌 계약이전	<b>· 개인연금 펀드매매</b> 신규매수 추가매수 종목전환 매도 신청내역조회/취소	<b>· 개인연금 ETF 매매</b> ETF 매매 체결기준 ETF 잔고	<b>개인연금 정보변경</b> 연간 납입금액/적립기간 변경 비율매수서비스 납입증명서 발급	<b>· 개인연금수령 개시신청</b> 개인연금수령 개시신청/ 취소 개인연금수령 개시정보 조회				

# 개인연금 정보변경

## 2. 개인연금 정보관리>연간 납입금액 등록



### 등록현황

연간 납입금액/계약금액	개인연금 가입일	적립기간	적립만기일
1 3,000,000 원	2007.01.22	연금개시연령까지(만55세)	2030.09.0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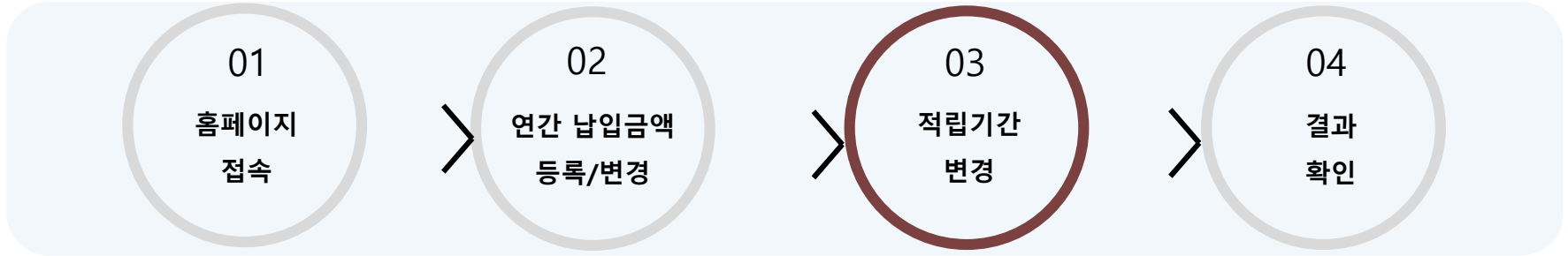
### 계약정보등록

연간 납입금액/계약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 원 +100만 +50만 +10만 +5만 +1만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장정"/> 잔여 한도금액 : 7,600,000 원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재조회"/>
적립기간	<input type="text"/> 개월 <small>! 적립기간은 최소 60개월 이상, 연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개월 수보다 초과한 개월 수로 입력</small>
적립만기일	

- ① 현재 등록된 연간 납입금액 확인
- ② 추가로 등록 가능한 잔여 한도금액을 확인 후 ③ 연간 납입금액 등록

# 개인연금 정보변경

## 2. 개인연금 정보관리>적립기간 변경



### 등록현황

연간 납입금액/계약금액	개인연금 가입일	적립기간	적립만기일
3,000,000 원	2007.01.22	1 연금개시연령까지(만55세)	2030.09.07

### 계약정보등록

연간 납입금액/계약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 원 +100만 +50만 +10만 +5만 +1만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장정"/> 잔여 한도금액 : 7,600,000 원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재조회"/>
적립기간	<input type="text" value=""/> 개월 <small>! 적립기간은 최소 60개월 이상, 연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개월 수보다 초과한 개월 수로 입력</small>
적립만기일	

- ① 현재 등록된 적립기간 확인
- ② 60개월 이상으로 적립기간 지정

# 개인연금 정보변경

## 4. 개인연금 정보관리>변경 내역 확인



정보 변경 확인

계좌번호	22	고객명	
<b>등록내역</b>			
연간 납입금액/계약금액	17,000,000 원		
적립기간	120 개월		
적립만기일	2030.05.28		

# 감사합니다.

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

[www.truefriend.com/pension](http://www.truefriend.com/pension)

- ※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※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※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